

## 울산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3

제출년월일 : '99. 10.

제출자 : 중구청장

### 1. 제안사유

수입인지에 관한 법령개정 및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행정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수입증지판매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실효성이 없거나 제도운영상 미비점 개선을 위해 전면 개정코자함.

### 2. 주요골자

-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제도를 계약제로 전환함.
- 판매인의 결격요건, 명의변경, 위치변경 조항을 삭제
- 수입증지 판매수익금을 후생복지증진을 위해 사용을 허용하던 것을 폐지
- 민원을 처리하는 실, 과, 사업소, 동에서도 수입증지판매 가능규정 신설
- 수입증지 수익금 납입을 5일이내에서 그다음 근무일로 조정함.

###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과 같음

### 5. 참고사항 : 입법예고('99. 10. 4 ~ 10. 23 의견없음)

울산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1999. 10. 4 ~ 10. 23일까지 20일간 공보에 입법예고하고 구·동계시판에 게시하였으나 주민의견 제시사항 없었음.

## 울산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울산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중구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의 발행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증지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을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울산광역시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구에서 수입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구에서 발행하는 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의 성질상 증지로 수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증지의 발행)** ① 증지는 구의 명의로 발행한다.  
 ② 울산광역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마다 증지 발행계획을 수립하여 년1회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증지의 발행일은 수불부에 기재된 날로 한다.

**제5조(증지요금계기의 사용)** ①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계기는 인영시 다음 각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년월일
4. 계기 고유번호

③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계기의 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발행기관명·발행장소·계기 고유번호·발행개시일등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여

야 한다.

**제6조(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 ①증지의 종류는 10원권, 40원권, 50원권, 60원권, 100원권, 200원권, 300원권, 400원권, 500원권, 700원권, 1천원권, 2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으로 한다.

②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구의 특색이나 자연보호운동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

**제7조(증지인수 및 보관)**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된 증지를 인수할 경우에는 구수입금출납원(이하“출납원”이라 한다)과 분임징수관이 입회하여야 한다.

②인수한 증지는 울산광역시중구 금고(이하“금고”라 한다)에 보관하고 출납하여야 한다.

③증지취급공무원이 증지를 인수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수령증을 제출하여야하며 인수한 증지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출납하여야 한다.

④구가 울산광역시의 수입증지를 교부 받아 보관할 경우에도 제 2항에 준한다.

**제8조(증지의 판매 등)** ①구청장은 민원을 처리하는 실·과·직속기관의 장 및 동장(이하 “취급기관”이라 한다)에게 증지를 판매·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증지취급기관 이외에 따로 증지를 일반인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자(이하 “판매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증지를 판매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거 증지를 판매하고자 하는 판매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체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증지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최근 1년간 제3항의 규정에 관한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해지를 당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제9조(증지 취급기관 등의 준수사항)** 증지취급기관 및 판매인은 다음 각호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증지판매장소는 당해 기관 민원실내에 설치하여야 하며 판매인

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별표 2와 같은 표시를 할 것

2. 일반인의 수요에 부족하지 않도록 증지를 비치할 것
3. 증지를 정가에 판매할 것

**제10조(증지취급 및 매수)** ①증지취급기관 및 판매인이 증지를 매수 하 고자 할 때에는 출납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증지 매수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출납원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증지 불출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금고에서는 제2항의 증지불출증과 증지대금을 판매인으로부터 수령하고 증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증지취급기관이 청구시에는 증지대금을 수령하지 아니한다.

**제11조(판매수수료)** ①구청장은 판매인에게 증지판매 수수료를 지급한다.

②수수료는 증지 액면가의 100분의 5로 하고 판매인은 이를 공제한 금액을 금고에 납부한다.

③금고는 제2항의 할인된 금액으로 증지를 교부한다.

**제12조(수입금의 정산)** ①증지취급기관이 징수한 증지수입금은 그 다음 근무 날까지 금고 또는 수납대행점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증지판매에 의한 수입금은 별지 제5호서식에, 계기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발행전표와 함께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계기의 고장 및 기타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 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복사 첨부하여 계기상의 금액과 발행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결손소인 규격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제13조(증지 진위조사)** 증지를 수납 및 소인하는 관계직원은 증지의 진위를 조사하고 위조 또는 변조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증지의 소인)** ①증지로서 수령한 것에 대하여는 즉시 이를 첨부 한 지면과 증지 문체에 걸쳐 명백히 소인하여야 한다.

## 6 (第24回-第2次附錄)

② 제1항의 소인의 규격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15조(증지의 무효)** 소인된 증지 또는 현저하게 오염되었거나 손상된 증지는 무효로 한다,

**제16조(증지의 환매)** ① 증지를 반환하여 현금으로 환부 받거나 또는 타자치단체 증지와 교환할 수 없다. 다만, 판매계약을 해지하거나 판매인이 사망한 때에는 본인 또는 상속인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할인매입가격으로 구청장에게 환매 청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환매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환매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한다.

③ 금고에서는 제2항의 환매증에 의거 청구인에게 제11조제3항의 매입금액으로 환매하여야 한다. 단, 10원미만은 10원으로 한다.

**제17조(증지의 교환)** ① 증지취급기관 및 판매인이 보유하는 증지가 오손·훼손 등으로 사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교환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원인이 증지취급기관 및 판매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교환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별지 제4호서식의 교환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한다.

③ 금고에서는 제2항의 교환증에 의거 청구인에게 증지를 교환하여야 한다

**제18조(출납정리)** 출납원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장부를 비치하고 증지 출납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9조(보고)** ① 금고에서는 매일 증지불출 상황을 출납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출납원은 매월 증지 수입상황을 결산 정리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판매용수입증지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전에 발행된 수입증지는 이 조례에 의하여 발행된 것으로 본다.
- ③(판매인에 관한 경과 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판매소로 지정된 판매인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8 (第24回-第2次附錄)

[별표1]

소인규격(지름 2.5Cm)

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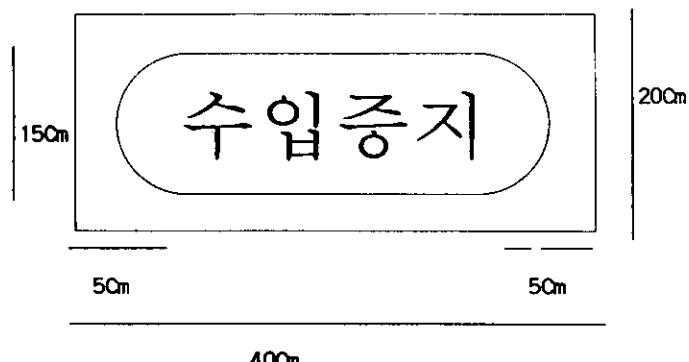


동



[별표2]

표 찰



[별표3]

결 손 소 인(지름2.5Cm)



[별지 제1호서식]

수입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체결신청서			처리기간 5일
판매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판매소설치장소			

(판매소 약도)

4

위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 울산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장소에서 수입증지를 판매하고자 수입증지판매에 관한계약 체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중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1통	수수료 없음
-------------------------	-----------

[별지 제2호서식]

## 수입증지매수(출납·교환·환매)청구서

구분 권종	재고량		청구(교환,환매)량		공재액 (청구액의 5/100)	현금납부 (지불액)	비고 (사유)
	매수	금액	매수	금액			
계							
10원							
40원							
50원							
60원							
100원							
200원							
300원							
400원							
500원							
700원							
1,000원							
2,000원							
5,000원							
10,000원							

위와 같이 수입증지를 매수(출납·교환·환매)청구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 수 입 증 지 수 령 증

종류	구분	수 량	금 액	적 요
계		매	원	
10원권		매	원	
40원권		매	원	
50원권		매	원	
60원권		매	원	
100원권		매	원	
200원권		매	원	
300원권		매	원	
400원권		매	원	
500원권		매	원	
700원권		매	원	
1,000원권		매	원	
2,000원권		매	원	
5,000원권		매	원	
10,000원권		매	원	

위 수입증지를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중구 동 수입금출납원

직

성 명

인

울산광역시중구청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 수입증지불출(교환·환매)증

No

수입증지지급(교환·환매)원부

판	성명	
매	주민등록번호	
인	주소	

액면권	매수	금액
10원권	매	원
40원권	매	원
50원권	매	원
60원권	매	원
100원권	매	원
200원권	매	원
300원권	매	원
400원권	매	원
500원권	매	원
700원권	매	원
1,000원권	매	원
2,000원권	매	원
5,000원권	매	원
10,000원권	매	원
할인금액	매	원
차인금액	매	원

발행

년 월 일

No

수입증지지급(교환·환매)증

판	성명	
매	주민등록번호	
인	주소	

액면권	매수	금액
10원권	매	원
40원권	매	원
50원권	매	원
60원권	매	원
100원권	매	원
200원권	매	원
300원권	매	원
400원권	매	원
500원권	매	원
700원권	매	원
1,000원권	매	원
2,000원권	매	원
5,000원권	매	원
10,000원권	매	원
할인금액	매	원
차인금액	매	원

상기 수입증지를 본 불출증  
지참인에게 지급(교환·환매)  
하시기 바랍니다.

발행199

울산광역시중구수입금출납원  
울산광역시중구금고 귀하

[별지] 제5호서식]

부불수자와의 대화

[별지 제6호서식]

수입증지판매대장

수입증지 요금계기 관리 대장

14 (第24回-第2次附錄)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수입증지(이하“증지”라 한다)의 발행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2조(정의)</b> <u>수입증지</u>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을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울산광역시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p> <p><b>제3조(적용범위)</b> ①구에서 수입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구에서 발행하는 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수수료의 성질상 증지로 수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규칙으로 정한다</p> <p><b>제4조(증지의 발행)</b> ①증지는 구의 명의로 발행한다          ②울산광역시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마다 증지발행 계획을 수립하여 년1회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u>(신설)</u></p>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중구 수입증지(이하“증지”라 한다)의 발행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2조(정의)</b> <u>증지</u>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을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울산광역시중구(이하“구”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p> <p><b>제3조(적용범위)</b> ①구에서 수입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구에서 발행하는 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수수료의 성질상 증지로 수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u>(삭제)</u></p> <p><b>제4조(증지의 발행)</b> ①증지는 구의 명의로 발행한다          ②울산광역시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마다 증지발행 계획을 수립하여 년1회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증지의 발행일은 수불부에 기재된 날로 한다.</p>

현 행	개 정 안
<p>③증지의 조제는 한국조폐공사에 위탁 발행하여야 한다</p>	<p>(삭 제)</p>
<p><b>제5조(수입증지요금계기의 사용)</b></p> <p>①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u>수입증지요금계기</u>(이하“계기”라 한다)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②계기는 인영시 다음 각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입증지요금</li> <li>2. 발행기관명</li> <li>3. 발행년월일</li> <li>4. 계기 고유번호</li> </ol> <p>③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계기의 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발행기관명·발행장소·계기 고유번호·발행개시일등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게시판에 <u>고시</u> 하여야 한다</p>	<p><b>제5조(증지요금계기의 사용)</b> ①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지요금 계기(이하“계기”라 한다)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②계기는 인영시 다음 각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입증지요금</li> <li>2. 발행기관명</li> <li>3. 발행년월일</li> <li>4. 계기 고유번호</li> </ol> <p>③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계기의 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발행 기관명·발행장소·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등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게시판에 <u>공고</u>하여야 한다.</p>
<p><b>제6조(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b></p> <p>①증지의 종류는 10원권, 40원권, 50원권, 60원권, 100원권, 200원권, 300원권, 400원권, 500원권, 700원권, <u>1,000원권, 2,000원권, 5,000원권,</u> <u>10,000원권</u>으로 한다</p> <p>②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구의 특색이나 자연보호운동을 상징 하는 도안으로 한다</p>	<p><b>제6조(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b></p> <p>①증지의 종류는 10원권, 40원권, 50원권, 60원권, 100원권, 200원권, 300원권, 400원권, 500원권, 700원권, <u>1천원권, 2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u> 으로 한다</p> <p>②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구의 특색이나 자연보호운동을 상징 하는 도안으로 한다.</p>

현 행	개 정 안
<p><b>제7조(증지인수 및 보관)</b>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제된 증지를 인수할 경우에는 구수입금출납원(이하 "출납원"이라 한다)과 <u>분임징수관</u>(<u>분임경리관</u>)이 입회하여야 한다.</p> <p>②증지를 인수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수령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인수한 증지는 <u>구급고</u>에 보관하고 출납하여야 한다.</p> <p>(신설)</p>	<p><b>제7조(증지인수 및 보관)</b>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된 증지를 인수할 경우에는 구수입금출납원(이하 "출납원"이라 한다)과 <u>분임징수관</u>이 입회하여야 한다.</p> <p>②인수한 증지는 <u>울산광역시증구</u> <u>금고</u>(이하 "금고"라 한다)에 보관하고 출납하여야 한다.</p>
<p>③구가 울산광역시의 증지를 교부 받아 보관할 경우에는 제2항에 준한다.</p> <p><b>제8조(판매인 지정)</b> ①증지는 구청장 및 동장이 지정한 판매인(이하 "판매인"이라 한다)이 아니면 판매 할 수 없다.</p> <p>②구청장 및 동장은 증지를 판매하는데 필요한 자격 및 신용이 있는 자 중에서 증지판매인을 지정하</p>	<p>③증지취급공무원이 증지를 인수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수령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인수한 증지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출납하여야 한다.</p> <p>④구가 울산광역시의 증지를 교부 받아 보관할 경우에도 제2항에 준한다</p> <p><b>제8조(증지의 판매 등)</b> ①구청장은 민원을 처리하는 실·과·직속기관의 장 및 동장(이하 "취급기관"이라 한다)에게 증지를 판매·관리하게 할 수 있다.</p> <p>②구청장은 제1항의 증지취급기관 이외에 따로 증지를 일반인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자(이하 "판매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증지를 판매하게 할 수 있다.</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거 증지를 판매하고자 하는 판매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p>

18 (第24回-第2次附錄)

현 행	개 정 안
여야 한다	체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삭 제)
③구청장은 직장새마을금고, 직원 공제회등 직원복지회(이하 “직장금 고”라 한다)에서 판매인 지정을 신청할 경우에는 타에 우선하여 판매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직장금고에서 판매종사원을 둘수 없는 경우와 판매인 지정이 곤란할 때에는 직장금고는 민원 담당공무원중 판매적임자에게 그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	
⑤동장이 판매인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u>제9조(판매인의 결격요건)</u> 다음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판매인 으로 지정할 수 없다.	④증지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최근 1년간 제3항의 규정에 관한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해지를 당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1.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되지 아니한 자.	
4.대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u>제10조(판매인 지정신청)</u> ①판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정신청서에	(삭 제)

현 행	개 정 안
<p>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구청장 및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직장급고가 판매인으로 지정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직장급고이사장, 직원공제회장등 직원복지회회장(이하“이사장”이라 한다)인감계와 판매 종사원의 인적사항을 첨부하여야 하며, 이사장이 산하 직장급고에 증거의 청구 및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위 입장과 위임 받은자의 인감계를 첨부하여야 한다.</p> <p>③구청장은 판매인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제2호서식에 의한 판매인 지정서를 교부하고 성명, 판매소의 위치, 증지교부를 받을 동명을 구보에 즉시 고시하여야 한다</p> <p><u>제11조(판매인의 의무)</u> ①판매인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장소에 별표2에 의한 표찰을 게시하여야 한다.</p> <p>②판매인은 민원인의 수요에 응할 수 있는 수량의 증지를 보유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판매하여야 한다.</p>	<p>제9조(증지 취급기관 등의 준수사항)</p> <p>증지취급기관 및 판매인은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증지판매장소는 당해 기관 민원실내에 설치하여야 하며 판매인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별표 2와 같은 표시를 할 것</li> <li>일반인의 수요에 부족하지 않도록 증지를 비치할 것</li> <li>증지를 정가에 판매할 것</li> </ol>

현 행	개 정 안
<p><b>제12조(판매인의 명의 위치변경</b></p> <p><u>판매폐지) ①</u>판매인의 명의 또는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u>②</u>판매인이 중지의 판매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수입증지판매인정서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삭 제)
<p><b>제13조(판매소의 위치)</b> 중지판매소는 민원실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실내에 중지판매소 설치가 곤란할 경우, 직장금고는 제8조 제4항에 준하여 그 판매를 위탁해야 한다.</p>	(삭 제)
<p><b>제14조(지정의 취소)</b> ①구청장 및 동장은 판매인으로부터 폐지신고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p>②지정판매인이 이 조례를 위반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판단된 경우도 이와 같다</p> <p>③동장은 판매인 지정을 취소할 시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삭 제)
<p><b>제15조(판매인의 승계)</b> 판매인의 사고, 기타의 사유로 판매인의 승계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0조에 의한 판매인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p>	(삭 제)

현 행	개 정 안
<p><b>제16조(판매 또는 관계인 신고)</b></p> <p>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판매인이나 기타 관계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거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삭 제)</p>
<p>1. 판매인이 판매 장소(주소지)를 변경하였을 때</p> <p>2. 판매인이 사망한 때</p> <p>3. 판매인의 주소가 불명할 때</p> <p>4. 판매인이 무능력자가 된 때</p>	
<p><b>제17조(증지취급 및 매수)</b> ① 판매인이 증지를 매수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증지매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출납원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증지 불출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p> <p>③ 금고에서는 제2항의 증지불출증과 대금을 판매인으로부터 수령하고 증지를 교부하여야 한다.</p>	<p><b>제10조(증지취급 및 매수)</b> ① 증지취급 기관 및 판매인이 증지를 매수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증지 매수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출납원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증지불출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p> <p>③ 금고에서는 제2항의 불출증과 증지 대금을 판매인으로부터 수령하고 증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증지 취급기관이 청구시에는 증지 대금을 수령하지 아니한다.</p>
<p><b>제18조(변상책임)</b> 판매인으로 지정된 자가 증지를 오손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증지제조에 소요된 실비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p>	<p>(삭 제)</p>
<p><b>제19조(정액판매)</b> 증지는 증지액면 정액으로 판매한다.</p>	<p>(삭 제)</p>

현 행	개 정 안
<p><b>제20조(판매인의 수수료)</b> 판매인에 대한 수수료는 증지액면 가액의 100분의 5로 하고 금고는 이를 할인한 금액으로 증지를 교부한다.</p> <p>다만, 계기 사용시에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p>	<p><b>제11조(판매수수료)</b> ① 구청장은 판매인에게 증지판매 수수료를 지급한다.</p> <p>② 수수료는 증지액면 가액의 100분의 5로 하고 판매인은 이를 공제한 금액을 금고에 납부한다.</p> <p>③ 금고는 제2항의 할인된 금액으로 증지를 교부한다.</p>
<p><b>제21조(계기사용 수입금의 정산)</b></p> <p>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한 증지대금의 납입은 금고 소재지에 있어서는 그 다음날까지, 그 이외의 곳에서는 5일이내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p> <p>② 계기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조정 카드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p> <p>③ 계기의 고장 및 기타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 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복사 첨부하여 계기상의 금액과 발행 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p> <p>(신설)</p>	<p><b>제12조(수입금의 정산)</b> ① 증지취급 기관이 징수한 증지수입금은 그 다음 근무날까지 금고 또는 수납대행점에 납입하여야 한다.</p> <p>② 증지판매에 의한 수입금은 별지 제5호 서식에, 계기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발행전표와 함께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 결산 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p> <p>③ 계기의 고장 및 기타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 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복사 첨부하여 계기상의 금액과 발행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의 결손 소인규격은 별표 3과 같이 한다.</p>
<p><b>제22조(판매수익금 관리)</b> ① 직장금고에서 증지판매로 인한 수수료 수익금은 직장금고설치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간의 후생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p>	<p>(삭 제)</p>

현 행	개 정 안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간의 후생복지증진을 위한 상조금 지급 방법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약에 따로 정하여야 한다.</p>	
<p>제23조(증지 진위조사) 증지를 수납 및 소인하는 관계직원은 증지의 진위를 조사하고 위조 또는 변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p>	<p>제13조(증지 진위조사) 증지를 수납 및 소인하는 관계직원은 증지의 진위를 조사하고 위조 또는 변조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p>
<p>제24조(증지의 소인) ① 증지로서 수령한 것에 대하여는 즉시 이를 첨부한 지면과 증지문체에 걸쳐 명백히 소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소인의 규격은 별표1과 같이 한다.</p>	<p>제14조(증지의 소인) ① 증지로서 수령한 것에 대하여는 즉시 이를 첨부한 지면과 증지 문체에 걸쳐 명백히 소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소인의 규격은 별표 1과 같이 한다.</p>
<p>제25조(증지의 무효) 소인된 증지, 또는 현저하게 오염되었거나 손상된 증지는 무효로 한다.</p>	<p>제15조(증지의 무효) 소인된 증지 또는 현저하게 오염되었거나 손상된 증지는 무효로 한다.</p>
<p>제26조(증지의 환매) ① 증지를 반환하여 현금으로 환부받거나 또는 타 자치단체 증지와 교환할 수 없다. 다만, 판매인이 사망한 후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승계지정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판매의 폐지 및 지정의 취소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p>	<p>제16조(증지의 환매) ① 증지를 반환하여 현금으로 환부받거나 또는 타 자치단체 증지와 교환할 수 없다. 다만, 판매계약을 해지하거나 판매인이 사망한 때에는 본인 또는 상속인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할인 매입가격으로 구청장에게 환매 청구할 수 있다.</p>
<p>② 구청장은 제1항의 환매를 청구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p>	<p>② 구청장은 제1항의 환매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p>

현 행	개 정 안
<p>환매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한다.</p> <p>③ 구 금고에서는 제2항 환매증에 의거 청구인에게 제17조제3항의 매입금액으로 환매하여야 한다.</p>	<p>환매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한다.</p> <p>③ 금고에서는 제2항 환매증에 의거 청구인에게 제11조제3항의 매입금액으로 환매하여야 한다. 단 10원 미만은 10원으로 한다.</p>
<p><b>제27조(증지의 교환)</b> ① 판매인이 보유하는 수입증지로서 오염·훼손 등으로 판매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교환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원인이 판매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교환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별지 제4호서식의 불출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한다.</p> <p>③ 구 금고에서는 제2항의 불출증에 의거 청구인에게 증지를 교환하여야 한다.</p>	<p><b>제17조(증지의 교환)</b> ① 증지취급기관 및 판매인이 보유하는 수입증지가 오손·훼손 등으로 사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교환 청구 할 수 있다. 다만, 그 원인이 증지 취급기관 및 판매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교환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별지 제4호서식의 교환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한다.</p> <p>③ 금고에서는 제2항의 교환증에 의거 청구인에게 증지를 교환하여야 한다.</p>
<p><b>제28조(장부비치 및 검사)</b> ① 판매인은 별지 제6호서식의 장부를 비치하고 증지의 수불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p>	<p>(삭 제)</p>
<p><b>제29조(출납정리)</b> 출납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증지출납부를 비치하고 증지 출납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p>	<p><b>제18조(출납정리)</b> 출납원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장부를 비치하고 증지 출납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p>

현 행	개 정 안
<p><b>제30조(보고)</b> ①금고에서는 매일 증지 불출상황을 출납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출납원은 매월 증지 수입표를 징수관에게 제출하여 월별로 결산 정리하여야 한다.</p>	<p><b>제19조(보고)</b> ①금고에서는 매일 증지 불출 상황을 출납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출납원은 매월 증지 수입상황을 결산 정리하여야 한다.</p>
<p><b>제31조(시행규칙)</b>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b>부 칙</b></p> <p>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울산시에서 이미 발행사용하던 수입증지는 판매완료시까지 사용한다.</p>	<p><b>제20조(시행규칙)</b>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b>부 칙</b></p> <p>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판매용수입증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발행된 수입증지는 이 조례에 의하여 발행된 것으로 본다.</p> <p>③(판매인에 관한 경과 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판매소로 지정된 판매인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p>

## 의안심사보고서 (의안번호 203)

1. 의안명 : 울산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

### 2.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99. 11. 4.
- 나. 제출자 :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다. 위원회 회부 : '99. 11. 5.
- 라. 위원회 상정 : '99. 11. 13

### 3.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총무국장)

- 수입인지에 관한 법령개정 및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수입증지판매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실효성이 없거나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면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제도를 계약제로 전환하고, 판매인의 결격요건, 명의변경, 위치변경 조항을 삭제하고, 수입증지 판매수익금을 후생복리증진을 위해 사용을 허용하던 것을 폐지하며, 민원을 처리하는 실,과,사업소,동에서도 수입증지판매 가능규정을 신설하고, 수입증지 수익금 납입을 5일 이내에서 그 다음 근무일로 조정하려는 내용임.

### 4. 검토보고요지(전문위원 : 장동철)

- 99.1.29일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수입인지 판매인은 계약을 체결도록 되어 있고, 또한 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수입증지 판매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실효성이 없는

조항에 대한 조례정비가 요구되어 전면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구 연 증지판매금액과 현재의 판매장소를 알려주시고  
현행조례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에서 명시된 판매인의명의,  
위치변경, 판매관계인의 신고사항을 모두 삭제하고 개정안  
별지 제1호 서식의 계약체결신청서로 관계인과 재계약에  
어려움이 없는지, 또한 개정안 제6조에 증지의 종류가 14  
종이나 되는데 실제 종류별로 사용되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됨.

## 5. 심사결과 : 원안가결